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(최인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4034

발의연월일 : 2021. 12. 22.

발 의 자:최인호·김주영·노웅래

박상혁 • 박홍근 • 서동용

서영교 • 위성곤 • 이원택

이학영 · 최기상 의원

(119]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해기사 면허의 취소·정지·견책 등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그행정처분의 세부기준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위임하고 있음.

이에 근거하여 시행규칙에서는 「수상레저안전법」에 따라 동력수 상레저기구 조종면허에 대하여 면허의 취소·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 은 사람이 현행법에 따른 한정면허를 가지고 있는 경우 지방해양수산 청장은 그 한정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에 대한 행정처분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행정처분을 하도 록 규정하고 있음.

이는 한정면허는 별도의 시험·승무경력 또는 교육 없이 「수상레저 안전법」상의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를 소지하고 있기만 하면 발 급되는 면허라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나, 「수상레저안전법」에 따른 조종면허와 현행법에 따른 한정면허는 발급요건은 동일하더라도 각 면허제도의 목적에 따라 개별적으로 발급된 면허이기 때문에, 침익적 행정행위에 해당하는 한정면허의 취소·정지를 위해서는 그 근거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해기사 면허의 취소 또는 업무정지 요건에 「수상례저안전법」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가 취소되거나 그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추가함으로써,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행정처분에 대한법률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(안 제9조제1항제8호 신설).

법률 제 호

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선박직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1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8. 「수상레저안전법」 제13조제1항에 따라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 면허가 취소되거나 그 효력이 정지된 경우(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한정면허를 발급받은 자에 한한다)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9조(면허의 취소 등) ① 해양수	제9조(면허의 취소 등) ①
산부장관은 해기사가 다음 각	
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	
에는 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	
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	
지를 명하거나 견책(譴責)을 할	
수 있다. 다만, 해당 사유와 관	
련된 해양사고에 대하여 해양	
안전심판원이 심판을 시작하였	
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	
1. ~ 6. (생 략)	1. ~ 6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8. 「수상례저안전법」 제13조
	제1항에 따라 동력수상레저기
	구 조종면허가 취소되거나 그
	효력이 정지된 경우(제4조제2
	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
	따라 한정면허를 발급받은 자
	에 한한다)
② ~ ⑦ (생 략)	② ~ ⑦ (현행과 같음)